



| | | | |
|--|--|--|--|
|  국토해양부 <small>Ministry of Land,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</small> | 보 도 자 료 | |  의박의 바다 <small>국토해양부</small> |
| | 배포일시 2008. 12. 9(수) 총 3매(본문 2, 붙임 1) | | |
| 담당 부서 항만부자협력과 | 담당자 • 과장 김완중, 사무관 길인환, 주무관 박용현 • ☎ (02)2110-8629, 8632, 8648 kilkil@korea.kr | | |
| 보 도 일 시 | 2009년 12월 10일(목) 조건부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 | |

‘요트계류장+리조트’ 마리나항만시대 개막 마리나법령 10일 시행…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기대

- 국토해양부(장관 정종환)는 요트나 레저보트와 같은 마리나선박의 계류시설과 호텔, 리조트를 결합하는 종합 해양레저시설의 개발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을 육성·지원할 수 있도록 제정된 ‘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(이하 “마리나법”)’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시행령·시행규칙을 제정하여 12월 10일부터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.
- 이 법령에는 마리나항만시설의 종류, 사업계획의 공모·제안 절차, 기반시설 등 비용의 지원대상, 마리나시설 관리·운영 등 마리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,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마리나선박과 마리나항만시설의 종류

- 마리나선박의 종류에는 요트, 모터보트, 윈드서핑용 선박 등 유람·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사용되는 선박으로 정하고,
- 마리나항만시설은 마리나선박의 계류 등을 위한 기반시설과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숙박·위락·

상업용 등 다양한 서비스편의시설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.

- * 기본시설(방파제, 항로, 안벽, 도로 등), 기능시설(주정장, 클럽하우스, 연수시설 등), 서비스편의시설(숙박, 위락시설, 수족관, 공원시설 등)

② 사업계획의 공모, 제안 및 처리절차

- 사업계획의 수립시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의 공모 및 사업제안(제3차 제안공고 포함), 평가방법 및 협상, 사업계획의 승인 등의 처리절차를 규정했다.

③ 기반시설 등 비용의 지원 대상

-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민간투자의 촉진을 위해 방파제, 도로 등 기반시설에 드는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.

④ 기타 개발사업 시행 및 관리·운영 등

-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 승인절차, 공사 완료시 준공확인 방법, 마리나항만의 기능 보전을 위해 시설 훼손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등 마리나항만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두었다.

- 이 법령의 시행으로 요트·레저보트와 같은 해양레저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마리나시설 확충 등 마리나항만의 개발·이용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해양레저·스포츠의 보급과 진흥을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<참고> 마리나개념 및 시설·선박의 종류

① 마리나 개념

- 마리나(Marina)란 라틴어로 “해변의 산책길”에서 유래된 단어
- 다양한 종류의 오락용 선박을 위한 계류시설, 수역시설 및 이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 시설(클럽하우스, 주차장, 보트선착장, 호텔, 맨션, 쇼핑센터 등)을 갖춘 종합적인 해양레저시설의 총칭

② 마리나항만시설의 종류

< 기본시설 >

- 외곽시설(방파제, 호안), 수역시설(항로, 정박지, 선류장)
- 계류시설(안벽, 부잔교, 선착장), 임항교통시설(도로, 교량)

< 기능시설 >

- 보관시설(주정장·보트창고), 승하가시설(경사로·크레인·리프트)
- 보급시설(급유·급전시설), 운영시설(클럽하우스·연수시설) 등

< 서비스 편의시설 >

- 복지시설(체육시설), 휴게시설(숙박·위락시설), 편의시설(쇼핑센터)
- 문화교육시설(박물관·캠프장), 공원시설(녹지·광장·조경) 등

③ 마리나선박의 종류

- 모터보트, 고무보트, 요트, 윈드서핑, 수상오토바이, 카누, 카약
- 유어선, 유람선 등 유람·스포츠·여가용으로 사용되는 선박

< 마리나법 주요내용('09.6.9 제정, 12.10 시행) >

- 적정수준의 전국단위의 체계적인 마리나기본계획 수립
- 마리나항만의 개발 시행절차 및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
 - 인·허가 의제(27개 법률)를 통한 사업시행절차 간소화 등
- 마리나산업단지 조성, 부담금 감면, 방파제 등 지원 근거